
입 법 정 보

2017-23호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의 회 사 무 처
(수석전문위원실)



목 차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5
2.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6
3.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7
4.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조달청)	7
5.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8
6.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	8
7.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9
8.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
9.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
10.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
11.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11
12.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14
13.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	14
14.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15
15.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6
16.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17
17.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8
18.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9
19.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19
20.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20
21.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20
22.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20
23. 결격사유 관련 규정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일부 개정법률(안) (법제처)	21
24.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재청)	22
2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23
26.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규칙 제정(안) (국토교통부)	24
27. 중소기업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	25
28. 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새만금개발청)	27

29.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통계법 시행령 등 20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 (법제처) ..	27
3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27
3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처)	28
32.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29
33.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청)	29
34.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30
35.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31
36.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32
37.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33
38.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33
39.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33
4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35
41. 주택도시시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35
42.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조정실)	36
43.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36
4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37
4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37
46.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37
4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38
4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38
4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39
50.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세청)	39
51.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소방청)	40
52.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방청)	40
53.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40
54.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처)	41
55.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42
56. 단기 산업교육시설 운영 규칙 폐지(안) (교육부)	42
57.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43
5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44
59. 항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44

60.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45
61.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47
62.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소방청)	48
63.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48
64.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49
65.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	49
66.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	50
67.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51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 예고일자 : 2017. 11. 27.
- 마감일자 : 2018. 01. 08.

○ 가.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 신설

1)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이 작업장 및 업소에서 지켜야 할 위생관리기준을 마련함(안 제6조, 별표 2)

2) 1인의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에 대한 안전관리인증기준의 교육훈련은 종업원 교육훈련으로 같음하도록 안전관리인증작업장 등의 인증요건을 완화하고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평가하기 위한 평가기준 등을 마련함(안 제7조의3, 별표 2의2)

3) 식용란선별포장업을 하는 영업자는 매년 3시간의 위생교육을 이수하고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가 같은 장소 또는 건물에서 식용란수집판매업을 추가로 개설하는 경우 위생교육을 면제함 (안 제46조, 제49조, 제50조)

4) 검란기·혈반검출기·파란검출기·중량선별기·세척기·건조기·살균기 등 식용란 선별·포장에 필요한 장비나 시설을 마련하고 작업장은 자동화시설로 가동속도는 시간당 2만개 이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등 영업의 시설기준을 마련함(안 별표 10)

5)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함(별표 11)

6) 식용란을 선별·처리·포장한 이력을 파악할 수 있는 ‘식용란 선별·포장 처리대장’ 작성·보관 의무와 식용란수집판매업자가 제출한 ‘식용란선별·포장 의뢰서’ 보관 의무 등 영업자 준수 사항을 마련함(안 별표 12)

나. 1인 1차량 축산물운반업 영업신고 간소화(안 제35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축산물운반업 영업을 신청하는 경우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는 생략하도록 함

다. 제품과 관련한 수상사실 표시·광고 허용(안 제52조, 별표 10)

제품과 직접 관련하여 상장을 받은 사실에 대한 표시·광고를 전면 허용 하되 이를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함

라.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의 식용란 검사(안 별표 5)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가 판매하는 식용란의 검사기준에 대한 고시 위 임근거를 마련함

마. 이동식 도축장의 반출온도 완화(안 별표1, 별표 12)

차량을 이용한 도축장에서 해체된 식육은 법 제4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중 축산물의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를 유지하여 반출 하도록 허용함

바.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의 안전한 달걀 유통·판매(안 별표 13)

최종 소비목적의 가정용으로 유통·판매하려는 식용란의 경우 식용란선별 포장장에서 선별·포장 등 위생적으로 처리된 것으로 하고, 식용란 농장에서 발급한 거래명세서를 보관하며, 「축산법」에 따른 허가나 등록된 가축사육업의 가축사육시설에서 생산된 식용란을 수집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정비함

사.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품목등록증 간소화(안 별지 제33호의3서식)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품목등록증 한 장에 품목 현황이 모두 포함되도록 서식을 정비함

2.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 예고일자 : 2017. 11. 27. • 마감일자 : 2018. 01. 08.

○ 식용란을 전문적으로 선별·포장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4957호, 2017. 10. 24. 공포, 2018. 4. 25. 시행)됨에 따라, 식용란선별 포장업 영업의 범위, 변경허가 사항,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을 마련하여 · 같은 위생·안전관리를 도모하는 한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자가 포

장육을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나 축산물판매업 영업자가 포장된 닭·오리의 식육, 포장육, 포장된 달걀을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 개별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 예외를 인정하며, 위해축산물 회수·폐기, 부적합으로 판명된 축산물 및 행정처분 확정에 관한 정보 공표에 따른 그 공표기간을 명확히 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영업자의 영업활동에 지나치게 부담을 주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는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7. 11. 27. • 마감일자 : 2018. 01. 08.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을 원활하게 확충하여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설치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계획서 작성기간 변경(안 제39조의3 제1항 제7호 개정)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 계약 기간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계약에 따라 결정됨을 고려하여 운영계획서의 작성기간을 ‘향후 3년간’에서 ‘위탁기간 동안’으로 정정

나. 국공립 어린이집의 보육실 설치기준 완화(안 별표 1 개정)

공동주택 내 주민공동시설(관리동)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2층에도 보육실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 불가피한 사유로 1층에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는 공공 업무시설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2층~5층 이하에 보육실 설치가 가능하도록 함.

4.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조달청)

- 예고일자 : 2017. 11. 28. • 마감일자 : 2017. 12. 05.

○ 주요 국정과제(일자리 나누기)의 성공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액

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일반임 기제 공무원 정원 5명(7급 5명)을 신설(증원)하는 한편, 열린 혁신 정부 등의 국정기조에 따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명칭을 ‘창조행정담당관’에서 ‘혁신행정담당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5.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 예고일자 : 2017. 11. 28. • 마감일자 : 2017. 12. 08.
- 산림분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현장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산림청에 인력 2명(8급 2명)을,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인력 1명(8급 1명)을, 지방산림청에 인력 13명(8급 13명)을 증원하고, 해당인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운영하는 한편, 임업분야 통상협상 및 임산물 수출 촉진 사무를 추진하기 위해 총액인건비제로 운영되고 있는 임업통상팀의 존속기간을 2018년 1월 5일까지에서 2021년 1월 5일까지로, 일선현장의 행정혁신 사무를 추진하기 위해 총액인건비제로 운영하고 있는 지방산림청 기획운영팀의 존속기간을 2018년 2월 1일까지에서 2021년 2월 1일까지로 각각 3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6.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 예고일자 : 2017. 11. 28. • 마감일자 : 2018. 01. 08.
- 농업에 참여하는 경영주 배우자의 직업적 지위를 보장하는 성격으로 공동경영주 등록제도를 도입(‘16.3.24) 하였고, 제도 시행과정에서 경영주 확인절차가 배우자의 자유로운 등록을 제한하여 공동경영주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경영체 등록서식 중 공동경영주 등록 시 배우자 동의부분을 개선하고자 함
- 가. 농업인의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안 별지 제1호서식) 개정

-공동경영주 여부를 표기하는 부분에 경영주 동의 부분을 삭제하고 배우자 스스로 경영에 참여하는지 선택하도록 서식 개선

* 별지 제1호서식 1쪽 및 6쪽 수정

7.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 예고일자 : 2017. 11. 28. • 마감일자 : 2018. 01. 08.

○ 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의무 강화 (안 제10조)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부통제의무를 면제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내부통제의무를 강화

나. 고객확인제도의 개선 (안 제10조의4 및 제10조의6)

금융회사가 법인 고객과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금융회사의 고객확인 사항 중 ‘대표자의 성명’ 을 ‘실지명의’ 로 변경하는 한편, 고객확인 조치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도록 위임함

다. 정보분석심의회 직무대리 사유 구체화 (안 제13조의2제4항)

위원장 업무의 직무대리가 가능한 ‘부득이한 사유’ 를 구체적으로 열거

라. 금융정보분석원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보존기간 단축 (안 제13조의3)

25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전신송금관련 자료(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와 외국환거래자료(법 제6조, 제10조 제3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의 보존기간을 25년에서 5년으로 단축

마. 심사분석 강화를 위한 요청대상자료 범위의 확대(안 제14조제2항, 별표1)금융정보분석원장이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지적전산자료를 추가

바. 검사·제재 권한 위탁제도 정비(안 제15조제3제13호)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검사 및 제재 권한을 위탁

사.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안 제17조, 별표2)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가중·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하고,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 상한을 규정

8.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7. 11. 28. • 마감일자 : 2018. 01. 08.

○ 현행 항공 보안검색 면제 대상자는 공무로 국외여행을 하는 국가원수로만 한정되어 있어 국내, 국외여행 구분을 없애고 원활한 경호업무 수행을 위해 국가원수의 배우자와 국가원수에 준하는 예우가 필요한 사람까지 확대하고, 현행 국내공항에서 보안검색을 받고 다른 국내공항에 도착한 후 국제선 항공기로 환승하는 승객에 대하여는 중복적인 보안검색을 면제하고 있으나 동일한 조건인 환승 승무원도 제외하고 있어 환승 승객과 동일하게 개선하며,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기가 이륙하기 전에 승객의 협조 의무를 영상물 상영 또는 방송 안내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법률 제14870호, 2017. 8. 9. 공포, 2018. 2. 10. 시행)하고, 국토부장관은 항공보안장비의 성능 인증 및 점검 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에 위탁(법률 제 14954호, 2017. 10. 24. 공포, 2018. 10. 25.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항공보안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하위법령을 마련하고자 함.

○가. 항공 보안검색 면제 대상자에 공무로 여행하는 국가원수의 배우자 및 그에 준하여 예우가 필요한 사람과 그 배우자를 추가(안 제15조제1항제1호)

나. 환승 승무원에 대한 보안검색 면제(안 제15조제1항제3호)

다. 항공 보안장비의 성능 인증 및 점검 업무 위탁기관 지정(안 제20조의2)

라. 항공운송사업자가 승객의 협조의무 영상물 상영 등 안내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안 제21조 관련 별표)

9.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예고일자 : 2017. 11. 28. • 마감일자 : 2017. 12. 14.

○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일자리 나누기를 위해 본부와 소속기관에 일반 임기제공무원 6명(7급 2명, 9급 4명)을 증원하고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기관의 관리운영직군 결원 16명(8급 8명, 9급 8명)을 유사직렬 정원으로 전환하기 위해 일부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10.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7. 11. 29. • 마감일자 : 2018. 01. 08.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이 개정(법률 제14867호, 2017.8.9. 공포, 2018.2.10. 시행)되어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종합계획”이 폐지됨에 따라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종합계획과 관련된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11.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 예고일자 : 2017. 11. 30. • 마감일자 : 2018. 01. 29.

○ 「의료기기법」이 개정(법률 제14330호, 2016. 12. 2. 공포)됨에 따라, 의료기기 통합정보 등록, 통합정보관리기준 등을 마련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의료기기 유통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보관 장소를 보유하지 않고 의료기기 통신판매만을 하는자에 적용하는 유통품질관리기준을 명확하게 규

정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의료기기 제조(수입)업 허가 등의 면제범위 확대(안 제10조 및 제32조)

- 1) 차세대 염기서열분석(Next Generation Sequencing, NGS) 등 첨단검사의 경우 임상검사실의장비·시설·인력·검사능력 등 일체를 평가·인증하는 임상검사실 인증제를 도입함에 따라 인증 받은 임상검사실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기의 제조·수입업 허가 등 면제 필요.
- 2) 임상검사실의 품질관리체계 및 검사성능 등을 평가하여 적합하다고 인증하는 임상검사실에서 질병의 진단 등에 사용하는 제품 중 식약처장이 정하는 의료기기에 대해 제조·수입허가 등을 면제하려는 것임.

나. 의료기기 광고의 범위 명확화(안 제45조)

- 1) 현행 법령에 의료기기 ‘광고’의 범위는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고(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전기통신 등)로 규정하고 있으나, 정보통신, 떼다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료기기의 허위·과대 광고로 인해 소비자 피해 발생함에 따라 광고의 범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 2) 이에 법령에 의료기기 광고 매체 및 수단 등 광고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광고 허용범위의 혼선을 방지하려는 것임.

다. 위해 의료기기 회수 절차 등 정비(안 제52조, 제53조 및 제57조)

- 1) 의료기기 품질불량 등으로 인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위험이 있는 사실을 인정한 경우에 해당 의료기기를 회수하거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2) 현재 위해 의료기기에 대한 종료보고서 제출 기한을 위해성 등급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30일로 정하고 있고, 의약품 등 타 분야에 비해 의료기기 회수계획서 및 종료보고서 제출기한이 장기간이므로 위해 의료기기 회수·폐기가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음.
- 3) 위해 의료기기의 회수·폐기 등의 처리 절차 등을 명확히 함으로 신속한 업무처리 및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의료기기통합정보관리기준 및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안 제54조의2 및 별표 7의2 신설)

- 1) 「의료기기법」 개정(법률 제14330호, 2016. 12. 2. 공포)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업자·수입업자는 의료기기 표준코드 및 의료기기에 관한 정보를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함.
- 2) 이에, 의료기기에 관한 정보 등을 효율적으로 기록·관리하기 위하여 제조업자 등이 준수하여야 하는 의료기기통합정보관리기준 및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3) 의료기기의 허가부터 사용까지 전주기(全週期)를 관리할 수 있는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의료기기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의료기기통합정보센터 운영기준 마련(안 제54조의3 신설)

- 1) 의료기기 정보의 수집·조사·가공·이용·제공 및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의료기기통합정보센터에서 수행하도록 근거가 마련됨.
- 2) 이에, 의료기기통합정보센터로 하여금 필요한 운영규정을 마련·준수하도록 하는 한편, 의료기기통합정보센터의 보고·지도·점검 등 의료기기통합정보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바. 의료기기 유통품질관리기준 합리화(안 별표 6)

- 1) 고령화와 건강관리에 관한 관심 증대 등으로 전자상거래를 통한 의료기기 온라인 판매가 증가함에 따라 의료기기 유통환경 변화를 반영한 유통품질관리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2) 이에, 보관 장소를 보유하지 않고 통신판매만을 하는 의료기기 통신판매업자에 적용하는 유통품질관리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사. 행정처분 기준 정비(안 별표 8)

- 1) 의료기기 용기, 외장 및 첨부문서에 거짓이나 오해할 염려가 있는 사항을 표시하거나 적어서는 아니 됨에도 이를 위반한 경우 기준 미비로 행정처분에 어려움이 있음.
- 2) 의료기기에 대한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하였음도 보고하지

아니하여 피해가 발생됨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3) 의료기기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12.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 예고일자 : 2017. 11. 30. • 마감일자 : 2017. 12. 11.

- 2018. 1. 7. ‘별과금등’을 납부대행기관을 통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관련 서식에 ‘별과금등’ 신용카드 납부에 관한 안내 문구를 삽입하고 고유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로 대체하려는 것임
- 형사소송법 제477조 제6항이 시행(’16. 1. 6. 신설, ’18. 1. 7. 시행)됨에 따라 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 등으로 별과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및 절차 마련 (안 제15조의2 제1항 신설)
- 고유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남용을 방지하고자, 별과금납부명령서 등 5개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로 대체하고 별과금납부명령서 및 독촉서 등 3개 서식에 ‘신용카드납부 안내’ 및 ‘분납(납부연기) 안내’ 문구를 추가 기재 (별지 제10호 별과금납부명령서 및 영수증, 제12호·제13호 별과금납부독촉서(1차·2차) 및 영수증, 제43호·제44호가납별과금납부명령(독촉)서 및 지로통지서 서식 개정)

13.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 예고일자 : 2017. 11. 30. • 마감일자 : 2017. 12. 14.

- 치료명령 선고시점과 집행시점 사이에 시간적 격차가 있음에도 피치료자가 집행시점에서 치료의 필요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절차가 없어 법원 등이 집행시점에서 치료 필요성을 다시 판단하여 불필요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집행 면제 신청의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법률 제00000호, 0000. 00. 00. 공포, 2018. 1. 1.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00000호, 0000. 00. 00. 공포, 2018. 1.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신청 등에 필요한 서식을 정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임.

14.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법무부)

● 예고일자 : 2017. 11. 30. ● 마감일자 : 2017. 12. 07.

○ 치료명령 선고시점과 집행시점 사이에 시간적 격차가 있음에도 피치료자가 집행시점에서 치료의 필요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절차가 없어 법원 등이 집행시점에서 치료 필요성을 다시 판단하여 불필요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집행 면제 신청의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00000호, 0000. 00. 00. 공포, 2018. 1. 1. 시행)됨에 따라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신청의 방법, 전문의의 진단 및 감정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신청(안 제5조의2)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를 신청하는 사람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

나. 조사(안 제5조의3)

법원이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 및 범죄사실의 요지를 통보

다. 치료명령의 집행(안 제7조 제1항 제4호)

현행은 치료명령 집행 전 보호관찰관이 판결문 등본, 지휘 서면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어,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에 관한 결정문 등본 또한 확인하도록 규정

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 및 감정(안 제27조 제2항 및 제3항)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치료감호시설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진단이나 감정 의뢰
마. 개인정보 처리 근거 규정 추가(안 제30조 제4항 제1호, 제2호 및 제5항 제1호)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결정 및 그 통지에 관한 사무, 보호관찰소의 장의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관련 조사에 관한 사무를 각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15.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7. 11. 30. • 마감일자 : 2017. 12. 14.
- 종교인소득 과세에 있어 비과세되는 종교인소득에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 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을 추가하고, 종교단체 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종교단체의 범위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및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법인 아닌 사단·재단 형태의 종교단체도 포함하며, 종교인 및 종교단체의 납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 적용요건을 완화하고, 종교인소득 원천징수간이세액표를 마련하며, 종교인소득에 대한 질문·조사의 범위 및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 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을 비과세되는 종교인소득에 추가함.
 - 나. 종교인소득은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임을 명확히 함.
 - 다. 종교인소득을 지급하는 종교단체의 범위에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및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법인 아닌 사단·재단을 포함함.
 - 라. 종교인소득을 지급하는 종교단체는 소속 종교관련종사자에게 지급한 금품 등과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구분하여 기록·

관리하도록 함.

마.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 확인기관에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추가함.

바. 종교단체에 대하여는 상시인원의 규모와 관계없이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

사. 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에는 종교인소득 원천징수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하도록 함.

아. 증명서류 제출대상 소득공제·세액공제 범위에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에 지출한 교육비를 추가함.

자.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종교단체가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구분하여 기록·관리한 장부 등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없도록 하고, 질문·조사권을 행사하기 전에 종교관련 종사자 또는 종교단체에 대하여 우선 수정신고를 안내하도록 함.

16.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7. 11. 30. • 마감일자 : 2018. 01. 29.

○ 최근 초소형자동차에 대한 국내수요와 안전운행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성 확보, 사고피해 감소 등을 위한 국내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국내 제작사들이 외국에 가서 인증을 받아와야하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초소형자동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가. 차량의 제원·중량 등 자동차 구조기준 마련(안 제6조제3항 신설)
차량총중량은 사후관리를 위한 배터리 무게와 차실 밀폐로 인해 발생하는 성에·서리를 제거하기 위한 내·외기 환기시설을 포함하여 규정함

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사고 예방을 위한 장치기준 마련(안 제12조의2, 제15조, 제15조의2,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4,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5조, 제49조, 제50조, 제51조, 제90조, 제101조, 제109조, 112조의2, 112조의4, 112조의5)

크기가 작은 초소형자동차의 제원을 고려한 등화장치의 설치·광도 기준 등 운전자의 시야확보를 위한 장치들의 기준을 제시했고, 낮은 중량과 속도제한(80km/h)를 고려한 제동장치의 성능기준 등을 마련하여 운전자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장치를 장착하도록 규정함
다. 사고시 피해감소 장치의 설치기준 완화(안 제26조, 제27조, 제27조의2, 제88조, 제89조, 제93조, 제98조, 제100조, 제102조, 제102조의2, 제103조의2, 제104조, 제111조의3, 112조의10)

팔걸이, 내부격실문과 같이 장착하더라도 피해감소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장치는 설치의무를 배제하였고, 현재 차량의 속도제한(80km/h)과 자동차전용도로·고속도로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충돌시 승객보호 및 보행자 보호 등과 같은 충돌 안전성 부분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점진적으로 도입을 검토함

라. 초소형자동차의 도로운행 및 보유·관리를 위해 필수적인 장치의 성능과 설치기준 마련(안 제20조 및 제23조, 제32조제4호 및 제111조제4호 신설)

내연기관을 장착한 초소형자동차의 출시를 고려하여 원동기출력의 기준을 규정하고, 초소형화물 자동차가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적재 장치의 공간과 구조를 규정하며, 차실을 밀폐하여 계절에 따른 기온차이, 비바람 등 환경변화와 관계없이 운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 도로운행 및 보유·관리를 위한 성능장치 기준을 마련함

17.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 예고일자 : 2017. 11. 30. • 마감일자 : 2017. 12. 07.

- 북핵·대량살상무기(WMD) 대응 업무의 체계적 수행을 위해 국방교육 정책관을 대북정책관으로 개편하여 국방분야 대북 기본정책 수립, 북한 대량살상무기 관련 대응정책 수립 등에 관한 업무를 분장하도록 하고, 국방정책실에 2019년 12월 0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북핵대응정책과를 신설하는 한편, 국방정책실장의 분장업무 중 군인의 평생학습에 대한 정책수립 및 제도 연구, 국방분야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한 업무를 인사복지실장의 분장 업무로 이관하는 등 국방부의 하부

조직과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18.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7. 11. 30. • 마감일자 : 2018. 01. 09.

- 교육부장관의 지방공무원 정원책정 대상을 4급에서 3급으로 상향하고 시·도교육청의 본청 실·국 설치 기준을 범주화하는 한편, 본청과 설치 요건과 공립의 각급 학교 배치 공무원의 직급 상한을 명시하여 시·도교육청 조직 관리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 가. 교육부장관의 지방공무원 정원 책정 승인 대상을 4급에서 3급으로 조정함(안 제15조의2)
 - 나. 본청에 설치 가능한 실·국 수의 범위를 조정함([별표1])
 - 다. 본청 과는 12명 이상[5급(상당) 이상 3명 포함]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는 경우 설치하도록 요건을 명시함(안 제6조4항)
 - 라. 공립의 각급 학교에는 5급 이하 공무원을 배치하도록 명시함(안 제20조2항)

19.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 예고일자 : 2017. 11.30. • 마감일자 : 2017. 12. 11.

- 현장 치안 역량 강화를 위해 업무혁신 및 근로시간 단축으로 절감된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일반직 공무원 614명(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명, 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24명, 행정주사보 15명, 전산주사보 7명, 공업주사보 52명, 시설주사보 1명, 항공주사보 1명, 통계주사보 1명, 사서주사보 1명, 행정서기 107명, 전산서기 29명, 시설서기 20명, 행정서기보 19명, 공업서기보 1명, 운전서기보 316명, 시설서기보 1명, 위생서기보 13명, 학예연구사 2명, 공업연구사 2명)을 증원하는 한편, 경찰인력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일반직 공무원을 재배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0.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 예고일자 : 2017. 12. 01. • 마감일자 : 2017. 12. 08.
- 국외전출시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신설에 따라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 「지방세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국외전출시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신설에 따라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와 납부서로 신고 납부하도록 하며, 납부유예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는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안 제100조의3)

21.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 예고일자 : 2017. 12. 01. • 마감일자 : 2018. 01. 10.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건강진단 실시 주기를 명확히 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98년 이후 물가상승률 등 인상요인이 반영되지 않은 건강진단 수수료 금액을 상향조정(1,500원 →3,000원)하여 현실화 함(제5조)
- 나. 휴업 기간 중에는 건강진단 의무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되, 휴업이 종료된 이후에 영업을 재개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에 건강진단을 받도록 함(별표)
- 다. 현행 건강진단 주기가 1회/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기준이 되는 날짜를 검진일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별표).

22.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7. 12. 01. • 마감일자 : 2017. 12. 08.
- 전력기금 R&D 기술료를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

진기금' 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전력산업기반기금 수입과 관련한 일부 미흡한 점을 개선하여 사업 효율성을 제고하고, 발전사업자가 전기사업법 제5조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자의 의무 등을 이행하는 경우를 발전사업자의 전기공급 거부사유에 추가하여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중지 등으로 발전사업자가 전기를 공급하지 않는 것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함.

○ 가. “기술료의 기금 출연 근거 변경” (안 제25조제4항 개정, 현행 제35조제1호 삭제)

1) 전력산업기반기금 R&D에서 발생하는 기술료를 산업기술혁신계정으로 일원화·통합

나. “전기공급의 거부 사유 추가” (안 제5조의2 제9조 신설)

1) 발전사업자가 전기의 공급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전기사업법 제5조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자의 의무 등을 이행하는 경우를 추가
다만, 전력계통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력거래소가 전기공급을 지시한 발전기는 제외

23. 결격사유 관련 규정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처)

● 예고일자 : 2017. 12. 01. ● 마감일자 : 2017. 12. 11.

○ 공정한 사회, 실패한 사람에게도 재기의 기회가 제공되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신분·자격 취득의 기회를 제공하고, 행위무능력 또는 파산을 이유로 허가나 등록 등에서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허가나 등록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격사유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4개의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 파산상태와 무관한 업무나 직역에서 파산자를 결격사유로 둔 경우
파산자 제외

나. 특정 범죄로 일정금액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를 결격사유로 하

는 경우, 벌금형의 분리 선고 규정 도입

다. 행위무능력 또는 파산을 이유로 등록이나 인허가가 취소된 자가 행위 능력을 회복하거나 복권되면 곧바로 등록이나 인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

24.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재청)

• 예고일자 : 2017. 12. 01. • 마감일자 : 2017. 12. 06.

○ 일자리나누기 등 핵심 국정과제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문화재청에 9명(7급 7명, 8급 2명), 국립고궁박물관에 1명(7급 1명), 궁·종묘관리소에 3명(8급 3명), 국립무형유산원에 1명(7급 1명)을 각각 증원하여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충원하고, 대국민서비스 강화와 내부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재배치 정원을 반영하며, 정책총괄과를 일자리 전담부서로 지정하여 그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열린 혁신 정부 등 새로운 국정운영 기조에 따라 관련 부서 명칭을 ‘창조행정담당관’ 에서 ‘혁신행정담당관’ 으로 변경하고, 조직 및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속기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기술직군 정원 1명(9급 1명)으로 조정하며, 소속기관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열린 행정혁신 업무 소관 과의 명칭 변경(안 제4조제2항 및 제4항)

-창조행정담당관을 혁신행정담당관으로 부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나. 일자리 전담부서 지정·운영 및 분장 업무 추가(안 제6조제3항)

-일자리 전담부서 지정 : 정책총괄과(문화재정책국)

-일자리 관련 정책 총괄 등 분장 업무 추가

* 청 내 일자리 관련 정책 총괄, 제도개선, 추진상황 확인·점검

* 문화재분야 미래전략 및 정책의 수립·관리 등

다. 일반임기제공무원 증원사항 반영(안 21조 단서, 안 제22조제3항·제9항 및 제11항)

-일자리나누기 차원에서 총액인건비제 활용한 14명 증원 근거 마련

라. 기타 대국민서비스 강화와 내부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재배

치 정원 반영 및 관리운영직군 1명의 기술직군으로 전환(별표 12 의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추가 지정(별표 6 제2호, 별표 11 제2 호) 등

2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7. 12. 01. • 마감일자 : 2018. 01. 10.

○ 버스는 서민 교통수단으로 대중교통의 중추 역할을 수행 중이나, 자가 용 확대, 고속철도 및 저가항공 등장으로 경쟁력이 점차 약화중이며, 정책적으로 요금을 낮게 유지하면서 인건비 유류비 비중은 높은 상황 에서 인건비 상승, 근로시간 기준 강화 등 지속적인 원가상승 요인으 로 인해 수익성도 지속적으로 약화되는 상황임.

이러한 버스업계의 영세성 및 수익성 저하는 운전자 및 차량 안전에 대한 관리미흡으로 연결되어 대형 교통사고 발생에 취약해지는 악순 환 구조를 형성하고 있음.

따라서, 버스업계에 대한 불필요·불평등한 규제에 대한 개선 및 합리 화를 추진하면서 업계 정상화를 위한 관리 강화, 여객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등을 병행함으로써 버스운송업의 경쟁력 강화 및 이용 수요 확대, 사업자의 부담 완화 등을 달성하려는 것임.

○ 가. 시내버스 운행구역 확대(안 제8조)

수도권 광역급행형 및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에 한하여 관할관청이 출 퇴근 등 교통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행 행정구 역 외 30km까지로 제한된 시내버스 운행구역 제한을 50km까지 확대 함.

나. 소화물 규제 완화(안 제40조의2)

운송할 수 없는 품목을 제외하고, 소화물 규격을 충족하는 물품은 이 용객이 신속한 운송을 위해 필요 시 별도 고시 없이도 운송 가능하도 록 개정함.

다. 전세버스 경영 및 서비스평가 도입(안 제43조)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상 택시만 평가토록 되어 있어 경영 및

서비스 평가대상에 전세버스를 추가하여, 우수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안전 및 서비스 수준 개선을 유도함.

라. 위탁수수료 결정절차 보완(안 제102조의2)

면허·등록·허가·인가 등 권한을 조합·연합회 등에 위탁한 경우, 수탁기관이 수탁업무의 수수료를 결정 시 위탁기관에 이를 신고하도록 하여 부적절한 수수료 결정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함.

마. 종사자 휴식시간 현실화(안 별표4)

시민 편의를 위해 출퇴근 시간대 시내·마을버스의 집중 배차가 필요한 경우, 지자체 조례를 통해 탄력적인 휴식시간 적용을 허용하되, 출퇴근 시간대 탄력적 휴식시간 적용에 따른 휴식시간 부족분은 그 외 시간대에 추가적인 휴식시간을 보장하도록 함.

26.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규칙 제정(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7. 12. 01. • 마감일자 : 2017. 12. 21.

○ 일반적인 도시철도와는 달리 타 교통수단 및 보행자와 함께 도로위를 운행하는 특성을 보유하고 있는 노면전차의 도입을 위해 전용로 설치 및 노면전차만의 별도의 건설·운전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도시철도법이 개정(법률 제14339호, 2016.12.2 공포, 2017.12.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가. 노면전차 건설 시 안전성, 편의성 및 다른 교통수단과의 환승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운영 시 안전사고 등을 대비한 비상대응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등 노면전차에 관한 일반적 건설 및 운전규칙을 정함(안 제5조, 제6조)

나. 선로는 궤도의 부설위치 및 도로 공유여부에 따라 도로연계형(혼용·전용) 또는 선로독립형으로 구분하고, 혼용 선로는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다. 다른 교통수단의 안전확보를 위해 교차로에 적절한 신호 설비를 설치하고 다른 교통신호와도 연계가 되도록 함(안 제20조)

라. 노면전차 운행 시 필요한 별도의 신호기 및 신호표지를 마련하고 해

당 신호기 등의 설치가 필요한 구간을 명시(안 제22조 ~ 제27조)

- 마. 도로 내 노면전차 정류장에는 대합실과 화장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
- 바. 노면전차는 도로의 최고속도를 초과 운행할 수 없도록 하고, 시계 운전의 경우 해당 도로의 최고속도와 관계없이 시속 70km 이상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운행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4조)
- 사. 차량 운전자는 철도안전법에서 정한 운전면허를 취득하도록 하는 등 운영종사자에 대한 자격을 규정(안 제52조)
- 아. 선로주변에서의 작업으로 노면전차 안전에 영향이 우려될 경우 해당 작업의 관리기관에 작업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작업중지요청을 받은 관리기관은 해당 작업의 중지와 함께 노면전차 운영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60조)
- 자. 인명,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철도사고, 운행장애 발생 시 철도안전법에 따른 철도사고 발생 시조치 절차에 따르도록 하고,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62조)

27. 중소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 예고일자 : 2017. 12. 04. • 마감일자 : 2017. 12. 07.

○ 원활한 국정 운영 수행을 위한 중소기업부 장관을 보좌할 장관정책보좌관 3급 또는 4급 1명을 증원하고 소상공인정책과 소관업무 중복 조항 삭제 등 일부 오류를 수정하기 위함

아울러 일자리나누기 등 핵심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중소기업부 소속기관(지방청, 학교)에 5명(9급)의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증원하기 위한 근거조항 및 존속기한을 반영하려는 것임. 또한 직제 제 26조와 연동하여 환경부 파견 정원 반영을 위한 환경직정원표 반영과 미래부 이관 인력에 따른 방송통신직 직렬을 본부 소속기관 정원표에 추가하고, 중소기업부의 성과평가제 적용 대상한시조직에 두는 직급별 공무원의 정원을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직

제 시행 규칙 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장관정책보좌관 1명 증원(직제 제6조, 직제시행규칙 제3조)

-중기정책은 소상공인부터 중소기업까지 정책대상 스펙트럼이 넓고, 창업, 금융, R&D, 상생협력, 공정거래 등 이슈가 다양

현재 장관정책보좌관은 1명으로 중소기업 정책 전반을 보좌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으로 장관 보좌 기능 강화를 위해 3급 또는 4급 1명을 증원

나. 소상공인정책과 업무분장 조항 수정(직제시행규칙 제11조)

-소상공인정책과 업무 분장 조항 중 일부 중복된 문항 삭제

* 소상공인 폐업 환경 개선에 대한 사항, 소상공인 통계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소상공인 세제지원에 관한 사항, 소상공인 전용 케이블 방송 운영에 관한 사항 중복 조항 삭제

다. 부처 이관 인력 및 파견 인력 해당 직렬 정원표 반영(정원표 3, 4, 5 수정)

-직제 제 26조에 명시된 환경부 파견 정원(1명)을 위한 정원표 반영

* 환경분야 규제 전문성 확보를 위한 환경직 파견 필요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에 따른 미래부 이관 인력 중 방송통신직렬 본부 소속기관 정원표에 반영

라. 중소기업부의 성과평가제 적용 대상 한시조직에 두는 직급별 공무원의 정원 조정(별표 7 한시조직 정원표 및 별표 3 본부 정원표 반영)

-총 정원 및 직급별 정원 변동 없이 한시정원 조정과 연동하여 본부 정원표 수정 반영

마.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인력 증원(직제시행규칙 제 16조 및 부칙 4조)

-정부 정책의 일환인 일자리 나누기의 범부처 동참을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예산 절감으로 신규 인력 증원

-소속기관(지방청, 학교) 방호서기보 5명 증원을 위해 직제시행규칙 상 근거조항 및 존속기간 명시(소속기관 운영 정원표 신설 반영)

바. 소속기관 정원표 수정 반영(별표5 정원표 등)

-소속기관(지방청) 4.5급 정원 누락 반영(6명)

28. 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새만금개발청)

- 예고일자 : 2017. 12. 04. • 마감일자 : 2017. 12. 11.
-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일자리 나누기 및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일부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29.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통계법 시행령 등 20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 (법제처)

- 예고일자 : 2017. 12. 04. • 마감일자 : 2017. 12. 08.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함으로써 「통계법 시행령」 등 20개의 대통령령을 일괄하여 정비하기 위하여 입법예고(2017. 11. 9. ~ 11. 30.) 및 관계 기관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초의 입법예고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를 반영하는 것임.
-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장사 관련 시설 중 현행 “화장시설”을 “화장시설(동물화장시설을 포함한다)”로 개정하려는 것임[일괄개정령안 제17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3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7. 12 04. • 마감일자 : 2018. 01. 15.
- 버스는 서민 교통수단으로 대중교통의 중추 역할을 수행 중이나, 자가용 확대, 고속철도 및 저가항공 등장으로 경쟁력이 점차 약화 중이며, 정책적으로 요금을 낮게 유지하면서 인건비 유류비 비중은 높은 상황에서 인건비 상승, 근로시간 기준 강화 등 지속적인 원가상승 요인으로 인해 수익성도 지속적으로 약화되는 상황임.
이러한 버스업계의 영세성 및 수익성 저하는 운전자 및 차량 안전에 대한 관리미흡으로 연결되어 대형 교통사고 발생에 취약해지는 악순

환 구조를 형성하고 있음.

따라서, 버스업계에 대한 불필요·불평등한 규제에 대한 개선 및 합리화를 추진하면서 업계 정상화를 위한 관리 강화, 여객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등을 병행함으로써 버스운송업의 경쟁력 강화 및 이용 수요 확대, 사업자의 부담 완화 등을 달성하려는 것임.

○가. 공동운수협정 제도의 보완(안 제9조)

공동운수협정으로 인한 분쟁발생 시에도 관할관청에서 현황 파악이 곤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운송업자간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한 경우, 협정서 등 공동운수협정의 증빙자료를 관할관청에 7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의무화 함.

나. 개선명령에 따른 손실보상 시기 개선(안 제15조)

벽지·비수익노선, 긴급 수송수요 등에 따른 개선명령으로 발생하는 손실분에 대한 보상 시기와 관련하여 현행 분기 단위에서 매월 단위로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개선함.

다.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대폐차 기준 완화(안 제40조)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해서도 차량충당연한 6년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 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16.12)에 따라 차량충당연한 6년을 적용받는 운송사업자에 기존 노선운송사업자 외에 임시검사를 통과한 전세버스운송사업, 특수여객운송사업을 추가함.

라. 과징금 처분기준의 정비(안 별표5)

위반횟수에 따라 처벌수준이 가중되는 사업일부정지 등 행정처분과 같이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도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부과금액이 차등되도록 과징금 부과기준을 정비함.

3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처)

- 예고일자 : 2017. 12. 04. • 마감일자 : 2018. 01. 15.

○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인에 대하여 대부지원을 실시하여 주거안정과 자립기반의 조성을 도모하고 있으나, 같은 독립유공자의 후손으로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다른 자녀들의 어려운 생활여건을 해소할 필요가 있어 독립유공자의 후손에 대한 대부지원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생활보장을 실현함으로써 독립유공자 예우를 확대하고 후손

의 주거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 가.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자녀는 모두가 대부대상자에 포함되도록 대부지원 대상을 확대함.
- 나. 대부대상자는 주택의 우선 공급 지원이 가능함.

32.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7. 12. 05. ● 마감일자 : 2017. 12. 12.
-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일자리 나누기를 위해 특허청 소속기관에 일반임기제공무원 2명(9급)을 증원하고,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2015년도 총액인건비제 시행으로 특허청에 신설된 산업재산창출전략팀, 국제특허출원심사2팀 및 자원재생심사팀 등 3개 팀의 존속기간을 2019년 9월 8일까지로 각각 연장하고, 성과관리 전략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총괄 업무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서 혁신행정담당관으로 조정하여 업무 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며, 과장보임근거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3.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청)

- 예고일자 : 2017. 12. 05. ● 마감일자 : 2017. 12. 11.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경우 25일 이내 등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 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산림청장 등은 일정 면적 이상의 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등의 산지전용타당성에 관한 심의를 거쳐야 하나,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해당 산지에서의 구역 등 지정·결정을 협의하기 위하여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산지전용타당성에 관한 심의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함.

34.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7. 12. 05. • 마감일자 : 2018. 01. 15.

○ 가. 약국 등 폐업·휴업 신고 시 첨부서류 요건 개선(안 제12조제1항, 제24조제1항 등)

약국 등이 폐업·휴업 신고를 할 때에 분실·훼손의 사유로 등록증, 허가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증, 허가증을 대신하여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

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활성화 기반 강화(안 제15조의6제1항)

약사·한약사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에 관한 사항을 복약지도서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함.

다. 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 적합 판정 대상 조정(제40조제6항)

허가를 받은 의약품 도매상이 영업소 소재지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른 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의 적합 판정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라. 의약분업 예외지역 내 약국개설자 등의 전문의약품 판매 분량 및 방법 조정(안 제44조제3항제2호)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약국개설자 등이 의사·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 분량의 범위를 5일에서 3일로 조정하고, 부신피질 호르몬제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품목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판매하도록 함.

마. 검사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약사·한약사의 행정처분 기준 마련(안 별표 3 II. 개별기준 제38호의2)

약사·한약사가 정신질환자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약사회·한약사회의 장이 면허취소 처분을 요구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약사·한약사에게 전문의의 검사를 받도록 명령하고,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면허 취소 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약사법」이 개정(법률 제14926호, 2017. 10. 24. 공포, 2018. 4. 25.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약사·한약사에 대하여 자격정지 3개월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바. 의약품 가격 표시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개선(안 별표 3 II. 개별기준 제29호가목)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소비자에게 직접 의약품 등을 판매하는 자가 용기나 포장에 가격을 적지 아니한 경우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약사법」이 개정(법률 제14926호, 2017. 10. 24. 공포, 2018. 4. 25. 시행)됨에 따라, 의약품의 가격을 적지 아니한 약국개설자 등에 대한 경고 등의 행정처분 기준을 삭제함.

35.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7. 12. 05. • 마감일자 : 2018. 01. 15.

○ 가. 약사회·한약사회에 두는 윤리위원회 심의·의결사항 확대(안 제8조의3)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의 장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정신질환자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면허취소 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약사법」이 개정(법률 제14926호, 2017. 10. 24. 공포, 2018. 4. 25. 시행)됨에 따라,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에 두는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면허취소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나. 과태료의 부과기준 개선(안 별표 3)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소비자에게 직접 의약품 등을 판매하는 자가 용기나 포장에 가격을 적지 아니한 경우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

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약사법」이 개정 (법률 제14926호, 2017. 10. 24. 공포, 2018. 4. 25.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개정 법률의 체계에 맞게 정비함.

36.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 예고일자 : 2017. 12. 05. • 마감일자 : 2018. 01. 15.

○ 최근 계란내 살충제 성분 검출과 관련, 동물용 의약품등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신속한 안전 조치를 위하여 동물용의약품 판매업소에서 동물용 의약품등의 거래내역을 기록 보관토록 하고, 농가 등 구매자에게 투약지도를 실시토록 하는 등 판매관리 체계를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가. 동물용 살충제 및 방역용 소독제 판매 시 거래내역 기록보관 의무화 (안 제22조제3항)

-축수산물내 잔류 우려가 있는 동물용 살충(구충)제와 가축전염병 방역 목적으로 사용되는 방역용 소독제에 대해 거래내역 기록보관 대상 제제에 포함 함

나. 동물약품 판매업소에 대해 동물용 의약품등 판매 시 투약 지도 의무 부여(안 제22조제4항)

-동물용 의약품등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판매업소에서 약품 구매자에게 사용대상, 용법용량, 금기사항 및 휴약기간 등 투약지도 준수 의무 부여

다. 거래내역 기록보관 등 실효성 확보를 위한 행정처분기준 신설(안 제 52조제1항 별표 3 II. 개별 기준 중 제55호)

-동물약품 판매업소에서 거래내역 기록보관 및 투약지도 미준수 시 업무정지 등 처분기준 마련

라. 동물용의약품 판매 관리대상에 수산질병관리원 개설자를 포함함(제 21조제1호, 제22조, 제26조의 2제1항, 제26조3제3항, 제50조제1항제2 항, 별표 3. II.개별기준)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는 수산질병관리원 개설자가 판매관리 대상에 누락되어 있어 이를 포함함

37.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 예고일자 : 2017. 12. 05. • 마감일자 : 2018. 01. 15.
-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상 기간연장 서식[별지 제17호 서식]을 정비하기 위한 개정임.
- 가. 공무상요양 기간 연장 시 부대경유 없이 본인이 직접 신청 가능하도록 서식 개선

38.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 예고일자 : 2017. 12. 05. • 마감일자 : 2018. 01. 15.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에 따라 시행령 상 군인연금법 을 인용한 조항을 변경하려는 개정임.
- 가. 가산 이자 계산방식에 신설조항 반영(안 제71조제2항 개정)
 - ‘급여의 제한 사유가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 등으로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에 미지급 급여액에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신설조항을 ‘가산 이자 계산방식’ 에 반영
- 나. 급여 신설에 따라 건강보험공단 업무 명확화(안 제60조의3 개정)
 - ‘군병원 치료가 가능한 경우’ 에도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하도록 급여가 신설됨에 따라 ‘공단 급여’ 부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 및 지급업무 등을 하도록 명확화
- 다. 법률개정으로 시행령의 근거조문이 변경됨에 따른 정비
 - (기존) 법 제30조의5 제1항 → (개정) 법 제30조의8 제1항
 - (기존) 법 제30조의8 → (개정) 법 제30조의8 제1항

39.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 예고일자 : 2017. 12. 06. • 마감일자 : 2018. 01. 15.
- 2017년 12월 31일까지 감면기한이 종료되는 일부 시설의 감면기간을 연장하고, 농산어촌 소득향상,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및 새만금지역 활성화를 위한 시설을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으로 신설하는 한

편 감면기한이 이미 종료된 시설을 삭제하는 등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 2017년 12월 31일 감면기간이 종료되는 일부 시설의 감면기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연장(안 별표 2 제2호라목1), 2), 제3호소목, 구목, 우목, 주목)

1) 경제자유구역 및 기업도시 개발구역에 설치하는 시설(안 별표 2 제1호라목 1), 2))

2) 관광지 및 관광단지, 공공임대주택, 전통사찰 유형문화 보존시설 및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시설(안 제3호소목, 구목, 우목, 주목)

나.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신설(안 별표 2 제2호라목3), 제3호차목, 두목)

1) 새만금 지역 설치 시설(택지 제외)의 경우 농업진흥지역 밖에 한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을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50% 감면(안 별표 2 제2호라목 3))

2) 마을공동으로 운영하는 농산어촌 체험시설을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에 설치하는 경우 농지보전 부담금 100% 감면(안 별표 2 제3호 차목)

3) 농어업인이 설치하는 농어촌형 태양광 시설을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50% 감면(안 별표 2 제3호두목)

다.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간 종료시설 감면 제외(안 별표 2 제3호오목, 루목, 무목, 부목, 수목, 쿠목11))

1) 2017년 12월 31일 감면기간이 종료되는 국제회의업의 시설 용지(안 별표 2 제3호오목)

2) 2012년 12월 31일 및 2017년 8월 2일 감면기간이 종료된 문화재 보존·정비 및 활용사업 시설, 식물원의 부대시설, 주말·체험 영농주택,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학교용지 및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중소기업 창업 공장 부지 등은 감면제외(안 별표 2 제3호 오목, 루목, 무목, 부목, 수목, 쿠목11))

4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7. 12. 06. • 마감일자 : 2017. 12. 26.
-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공공형 택시가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공공형 택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 지역에도 13인승까지의 택시운송사업을 허용하기 위함임. 또한, 고급·승합 택시운송사업이 신설됨에도 불구하고, 사업구역이 시·군 단위로 제한됨에 따라 해당 택시운송사업에 대한 수요가 풍부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활성화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이에 따라, 고급·승합 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에 대한 제한이 완화될 필요성이 있음.
- 가. 승합 택시운송사업을 군 지역에도 허용함(현행 제9조제4호 단서 삭제)
- 나. 승합·고급 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을 기존 시·군에서 시·도 단위로 광역화함(안 제10조제1항 단서 신설)

41.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7. 12. 06. • 마감일자 : 2018. 01. 15.
 - '08.4월 이후 10여년간 변동 없이 지급되어온 주택도시기금의 운용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는 기금채수탁자에 대한 위탁수수료 단가를 그간의 물가 및 임금 상승, 업무 자동화 등 변화된 금융기관의 업무 여건 변화, 주택도시기금 제도 변화 등 대내외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위탁수수료 단가를 조정하고자 함
 - 가. 주택도시기금 채수탁자에 대한 위탁수수료 단가를 물가 및 임금상승, 업무자동화 등 금융기관의 영업환경 변화, 주택도시기금 제도 변화 등을 반영하여 조정함(안 별표3)
 - 나. 청약저축 잔고계좌 중 장기간 납입이 없는 장기미납계좌*의 관리수수료를 분리하고, 업무성격에 따른 수수료동인을 정비함(안 별표3)
- * 장기미납계좌 : 청약저축의 잔고좌수 중 최종거래일로부터 2년간(선납기간은 제외) 납입이 없는 계좌

42.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조정실)

- 예고일자 : 2017. 12. 06. • 마감일자 : 2018. 01. 15.
- 과징금, 과태료의 징수 및 부과에 관한 사항을 행정규제기본법 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 이 개정(법률 제 15037호, 2017.11.28 공포)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법령 문구 및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과징금·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법 적용 범위에서 제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라 과태료·과징금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시행령 조문을 정비
- 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규제개선 건의 수단으로 명시 주요 규제개선 건의 수단인 인터넷 홈페이지를 시행령 상 의견제출 방법으로 명문화함
- 다. 법률과 문구·용어가 통일되게 조문 정비 법률과 일치하지 않는 문구·용어를 정비하고, 인용조문의 오류를 정비하고자 함

43.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 예고일자 : 2017. 12. 06. • 마감일자 : 2017. 12. 11.
- 참전유공자의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범위를 100분의 90으로 확대하고 상이7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상이처 외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 부담 범위를 100분의 10으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이 개정됨에 따라, 참전유공자의 진료비 감면비율 및 상이등급 7급의 상이자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진료비용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요양급여로 실시하는 65세 이상인 전상군경 등의 치과임플란트 비용 중 본인부담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여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지원대상자간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4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 예고일자 : 2017. 12. 06. • 마감일자 : 2017. 12. 11.
- 상이등급이 6급 미만으로 판정된 특수임무부상자가 부상 외의 질병에 걸려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 부담 범위를 진료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10으로 조정하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의료지원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4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 예고일자 : 2017. 12. 06. • 마감일자 : 2017. 12. 11.
- 장애등급이 11급 미만으로 판정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상이처 외의 질병에 걸려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 부담 범위를 진료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10으로 조정하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의료지원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46.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 예고일자 : 2017. 12. 06. • 마감일자 : 2017. 12. 11.
-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22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함으로써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의 수준을 높이고, 참전유공자에 대한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75세이상) 진료비 감면 범위를 현행 본인부담 진료비의 60퍼센트에서 90퍼센트로 확대하여 고령 참전유공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4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 예고일자 : 2017. 12. 06. • 마감일자 : 2017. 12. 11.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게 장애등급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수당을 각각 5퍼센트 인상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지원의 수준을 높이려는 것임.

또한 장애등급 중등도 장애 미만으로 판정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결정·등록의 사유가 된 질병 외의 질병에 걸려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 범위를 진료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10으로 조정하여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4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 예고일자 : 2017. 12. 06. • 마감일자 : 2017. 12. 11.

- 재해부상군경 또는 그 유족과 재해사망군경의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을 지급대상 및 상이등급별로 각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상군경, 순직군경의 유족 또는 공상군경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의 보상금이 인상됨에 따라 그 인상된 보상금의 70%로 연동하여 인상하는 등 재해부상군경 또는 그 유족 등에 대한 지원의 수준을 높이고 또한 상이등급 7급으로 판정된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이 상이처 외의 질병에 걸려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 부담 범위를 진료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10으로 조정하여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지원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4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 예고일자 : 2017. 12. 06. • 마감일자 : 2017. 12. 11.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을 지급대상 및 상이등급별로 각각 5퍼센트에서 7퍼센트까지 인상하고, 중상이부가수당의 월 지급액을 상이등급별로 각각 5퍼센트 인상하며, 4·19혁명공로자 보상금을 12만7천원 인상하고, 무공영예수당을 8만원 인상하며,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대상별로 각각 5퍼센트 인상하는 등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한 지원의 수준을 높이고, 7급상이자 상이처외의 질병 진료비용 중 본인부담비율을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10으로 조정하여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50.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세청)

- 예고일자 : 2017. 12. 06. • 마감일자 : 2017. 12. 12.
- 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임기제공무원 정원 중 근무기간 만료로 퇴직한 1명(6급1명)의 정원을 줄이고, 존속기간 만료 예정인 2명(6급1명, 7급1명)의 존속기한을 2020. 12. 31까지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로 직급상향한 6급 정원 45명을 환원하는 한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인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세관관서 정원 중 위생서기보 2명을 조리서기보로 전환하려는 것임
- 가. 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임기제공무원 정원 등 정비
 - 근무기간 만료로 퇴직한 임기제공무원 6급 1명 정원 감축
 - 존속기간 만료예정인 2명(6급1명, 7급1명)의 존속기간을 2020.12.31.까지 3년 연장
- 나. 총액인건비제로 직급 상향한 6급 정원 환원
 - 총액인건비제로 직급 상향한 6급 45명을 8급 22명과 9급 23명으로 환원
- 다. 위생·조리직 정원 조정
 - 조리직 채용을 위하여 위생직 정원을 감축(9급 △2명)하고 조리직

정원을 증원(9급 +2명)

51.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소방청)

- 예고일자 : 2017. 12. 07. • 마감일자 : 2018. 01. 17.
- 시 도지사로 하여금 화재경계지구 지정현황 등 관련 자료를 매년 작성·관리하도록 하는 「소방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3916호, 2016.1.27. 공포, 2016.1.27.시행)됨에 따라,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현황, 소방특별조사의 결과 등 화재경계지구에서의 화재예방 및 화재경계를 위해 작성 관리하도록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화재경계지구 관리대장의 작성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영 제4조제6항에 따른 화재경계지구 관리대장은 별지 제8호서식으로 함(안 제3조의2)

52.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방청)

- 예고일자 : 2017. 12. 07. • 마감일자 : 2018. 01. 17.
- 화재경계지구로의 지정 대상지역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대통령령에서 시 도지사로 하여금 화재경계지구 지정현황 등 관련 자료를 매년 작성·관리하도록 하는 「소방기본법」이 개정(법률 제 13916호, 2016.1.27. 공포, 2016.1.27.시행)됨에 따라,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현황, 소방특별조사의 결과, 소방설비 설치 명령 및 소방교육의 현황 등 법률에서 위임된 화재예방 및 경계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53.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 예고일자 : 2017. 12. 07. • 마감일자 : 2018. 01. 16.
- 진단 및 치료기술의 발달 등 의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병역판정 및 입영신체

검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 하기 위함.

○ 가. 본문 21개 조항 중 8개 조항 개정

· 신장·체중은 가변성이 있어 입영신체검사에서 재측정할 경우 불필요한 귀가·재입영을 야기하므로, 병역판정신체검사 결과를 반영

나. 초저체중자, 초고도 비만의 경우 기초군사훈련, 사회복지무요원 근무가 부적합한 경우가 있고, 심혈관 질환 등 질병 발생률이 높아 병역면제 기준이 필요하므로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 조항 개정 (안 별표 1)

· 체질량지수(BMI) 14 미만, 50 이상인 경우 종전에는 4급 판정하던 것을 5급으로 변경

다.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411개 조항 중 81개 조항 개정 (안 별표 2)

· 자폐증, 아스퍼거장애와 같은 전반적 발달장애는 증상이 경미하더라도 병영생활에 적응이 어려우므로 3급에서 4급으로 변경

· 발목관절이 발등쪽으로 전혀 굽혀지지 않을 경우 4급에서 5급으로 변경

· 지방간으로 진단되었더라도 군복무가 가능하므로 병역에 대한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4급에서 3급으로 변경

54.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처)

● 예고일자 : 2017. 12. 07. ● 마감일자 : 2018. 01. 17.

○ 2017년 10월말 현재 국립묘지 안장대상자 45만여 명 중 85세 이상은 9만 5천여 명으로 향후 4~5년 이내에 사망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국립묘지 영예성 훼손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죄경력 또는 병적에 이상이 있는 고령 안장대상자에 대하여 사망하기 전에 국립묘지 안장 가능 여부를 미리 결정하여 알려줌으로써 유족의 장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사전심의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묘역 구분 시 안장대상과 묘역 명칭을 일치시킴으로서 명칭의 오류를

바로 잡고자 함

구(舊)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조문을 인용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을 맞추어 국립묘지 관리·운영상의 혼선을 정비하고자 함

55.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7. 12. 07. ● 마감일자 : 2018. 01. 16.
- 산업수요 및 직업교육 환경 변화에 따른 불필요한 규제 개선을 위해 『단기 산업교육시설 운영 규칙』을 폐지하고, 폐지 조항 중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학칙에 관한 사항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입법하여 단기교육시설의 장이 학칙에 따라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하고자 함.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제2조의1 신설)
 - 학과·학급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교과·수업일수·수업시간 및 휴업일에 관한 사항, 입학·퇴학·휴학·수료 및 상벌에 관한 사항, 직원에 관한 사항,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56. 단기 산업교육시설 운영 규칙 폐지(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7. 12. 07. ● 마감일자 : 2018. 01. 16.
- 단기 산업교육시설 설치 운영 주체가 산업수요·요구에 대응하여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단기 산업교육시설 설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교육과정, 교직원 배치 및 시설·설비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2016.3.22. 개정, 2016. 9. 23. 시행) 및 동법 시행령 제6조(2017.6.20. 개정, 2017. 6. 20. 시행)로 규정됨에 따라 동 부령을 폐지하고자 함.

57.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7. 12. 07. • 마감일자 : 2018. 01. 16.

○ 현재 교육부 고시에 규정된 인정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시정명령, 인정기관 지정 철회·취소 근거를 상위법령에 마련하고, 인정기관 재지정 신청 시기 조정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함

○ 가. 교육부장관의 인정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근거 명시(안 제9조의2 신설)

1) 인정기관의 사회적 책무성을 고려하여 제5조에서 정한 인정기관 지정 기준 준수여부 점검, 평가 인증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중단 폐지 등에 대해 교육부장관의 지도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나. 교육부장관은 기간을 정하여 인정기관에 대한 시정요구 및 인정기관 지정 철회 취소 근거 명시(안 제9조의3 및 제9조의4 신설)

1) 평가 인증의 공정성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인정기관의 허위자료 제출 등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

2) 인정기관이 교육부장관의 시정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인정기관 지정을 철회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교육부장관은 인정기관 지정 재지정의 철회 또는 취소 시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

다. 인정기관의 인정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재지정 신청하도록 개선(제7조제1항 개정, 제7조의2제1항제1호 개정)

1) 인정기관 재지정 여부 통보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감안하여 인정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이전까지 재지정 신청을 하도록 함

라. 인정기관심의위원회 위원 수 확대(제10조제2항 개정)

1)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전문성 일관성 제고를 위하여 위원을 현행 ‘9명 이내’ 에서 ‘15명 이내’ 로 확대함

5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 예고일자 : 2017. 12. 08. • 마감일자 : 2017. 12. 13.
- 국가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에 소요되는 최소 연수를 단축하는 내용으로 「경찰공무원법」이 개정(2017. 9. 19.)됨에 따라 제주자치경찰공무원도 근속승진에 소요되는 최소 연수를 단축함으로써 국가경찰공무원과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임.
- 자치순경을 자치경장으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5년에서 4년으로, 자치경장을 자치경사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6년에서 5년으로, 자치경사를 자치경위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7년 6개월에서 6년 6개월로, 자치경위를 자치경감으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12년에서 10년으로 근속승진에 소요되는 최소 연수를 각각 단축함.

59. 항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7. 12. 08. • 마감일자 : 2018. 01. 17.
- 항만시설 유지·보수공사의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을 완화하고, 비관리청 항만공사의 연장기한 설정, 항만건설작업선의 선박검사 의무 조항 조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항만시설 유지·보수 공사의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완화(안 제4조)
유지·보수 공사의 경우 법 제9조제3항제3호에 따른 항만공사를 시행할 사업수행능력 중 재원조달능력의 적정성평가를 제외하여 절차간소화 및 평가기준 완화
- 나. 공고대상 사업 허가신청서 개정(안 제5조)
공고대상 사업 허가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와 비공고 사업 허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통합하고, 같은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투자비 보전계획서,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하도록 명시한 서류를 시행령으로 상향하여 규정함에 따라 해당 규정 삭제

다. 비관리청 항만공사의 연장 기한 설정(안 제8조)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연장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

라. 사업기간 연장 귀책 사유의 변경(안 제12조)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중 “중대한 과실” 을 “과실” 로 변경

마. 항만건설작업선에 대한 「선박안전법」 적용특례(안 제14조의2)

종전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로서 「항만법」 적용을 받는 항만건설작업선이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선박안전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별도 건조검사를 받은 것으로 봄

바. 종전 건설기계에서 새로이 항만건설작업선으로 포함되는 선박의 최초 중간검사 기산일에 대한 특례(안 부칙 제2조)

이 규칙 시행 전에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정기검사를 받은 항만 건설작업선의 최초 중간검사의 시기를 해당 정기검사를 받은 날 부터 3년이 되는 날의 전후(前後) 3개월 이내로 함

60.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7. 12. 08. • 마감일자 : 2018. 01. 17.

○ 비관리청의 항만공사 시행허가 신청서류 보완, 토지가액 평가방법 개선, 국가귀속 항만시설의 총사업비 산정방법 개선, 항만건설작업선의 선박검사 의무 조항 조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신청서류 보완(안 제10조)

- 1)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 허가신청서에 타당성조사 보고서를 첨부하도록 신설
- 2)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허가신청서에 환경영향평가서를 첨부하도록 신설, 단 공고대상사업은 실시계획 승인 신청 전까지 제출
- 3) 시행규칙 제5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투자비 보전 계획서,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

하도록 명시한 서류를 시행령으로 상향하여 규정

4) 공사에 사용되는 자금의 조달계획 평가기준 및 방법을 ‘고시’에서 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5) 비관리청의 항만공사 유지·보수공사 허가신청서에 신청인, 공사 종류, 공사규모, 공시기간 등의 항목 추가

나. 항만공사 공고대상 사업에 ‘보강’ 공사 추가(안 제11조)

대규모 사업비가 소요되는 ‘보강’ 공사를 공고대상 사업에 추가

다. 비관리청 항만공사실시계획의 단계별 승인시 단서 조항 마련(안 제 13조)

비관리청 항만공사실시계획을 단계별로 승인할 경우 사업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단계별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 신설

라. 비관리청 항만공사로 조성된 토지의 감정평가 방법 개선(안 제18조)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하도록 하고, 감정평가액이 적정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거나 감정평가액 차이가 클 경우 재 감정절차 제도 마련

마. 비관리청 항만공사 총사업비 산정기준일 변경, 부대비용 인정범위 확대, 건설이자 현실화, 비관리청 전용사용 준설비용 제외 등 총사업비 산정방법 개선(안 제19조)

1) 총사업비 산정기준일을 ‘준공확인일’에서 ‘준공확인 요청일’로 변경

2) 사업추진을 위해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금융부대비용, 영업준비금 등을 부대비 항목에 추가

3) 건설이자 지급기간을 공사준공일까지로 명확히하고, 건설이자율은 수신금리에서 수신금리와 대출금리의 가중평균으로 함

4) 건설이자 제외사유를 ‘중대한 과실’에서 ‘과실’로 변경하고, 총사업비 산정내역 확인 증빙자료에 ‘대출증빙 서류’ 추가

5) 국가비귀속 전용부두에 진입하는 선박만을 위한 수역시설 준설공사는 투자비보전 대상에서 제외

바. 비관리청의 항만시설 사용료 산정기점 통일(안 제20조)

무상사용 기간의 항만시설 사용료 산정 기준시점을 사용 당시의 항만시설 사용료로 변경

사. 산고대상 항만시설장비의 추가(안 제23조 및 별표4)

크루즈 선박에 승·하선할 때 승객들이 이용하는 ‘탑승교’를 산고대상 항만시설장비로 지정

아. 민간이 개발·분양한 1종 항만배후단지에 대한 관리기준과 입주기업의 준수사항 마련(안 제44조)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의 내용에 민간이 개발·분양한 1종 항만배후단지에 대한 관리기준과 입주기업의 준수사항 등을 포함

자. 토지매수업무 등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에 한국감정원 추가(안 제80조)

차. 항만시설의 국가귀속 및 국가에 귀속된 항만시설의 무상사용 신고 수리에 대한 권한 위임(안 제91조)

법 제15조(항만시설의 귀속 등)에 따른 항만시설의 국가귀속 및 국가에 귀속된 항만시설의 무상사용 신고 수리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지자체에 위임

카. 부산항 및 제주도 애월항 수상구역 변경사항 반영(안 별표1)

부산항 수상구역 “다” 목 제외해면의 좌표 오류사항 수정, 제주도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수상구역 변경사항 반영

61.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 예고일자 : 2017. 12. 08. • 마감일자 : 2018. 01. 17.

○ 해외규격획득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법 제29조제2항(권한의 위탁)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 또는 단체에 출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시행령에는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위탁기관 또는 단체에 관한 규정이 없어 출연금 교부 근거가 불명확한 상황으로, 출연 대상기관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 제17조제4항,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선정된 수행기관을 출연 대상기관으로 규정하고자 함.

62.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소방청)

- 예고일자 : 2017. 12. 08. • 마감일자 : 2018. 01. 17.
- 소방관련학과를 졸업한 학력이 있는 사람에 대한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자격을 4년제와 2년제로 구분하지 않고 있는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4년제 대학의 소방관련학과에 재학중이거나 재학했던 사람으로서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별표 2의 소방관련 과목을 45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에게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자격 부여(안 별표 4)

63.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7. 12. 08. • 마감일자 : 2017. 12. 13.
- 2017년 12월 31일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한시조직 중 질병관리본부에 두는 긴급상황센터 및 감염병진단관리과를 정규조직으로 전환하고 이에 따른 한시정원 6명(고위공무원 1명, 4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3명)을 보건복지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으로 전환하며 위기소통담당관 및 위기분석 국제협력과는 존속기한을 2년 연장하고, 보건복지 관련 대국민 정보제공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복지콜센터’의 명칭을 그 기능에 부합하도록 ‘보건복지상담센터’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7. 12. . 공포·시행)됨에 따라, 시행규칙에 동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일자리 나누기 및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도를 활용하여 보건복지부에 2명(9급 2명)과 질병관리본부에 2명(9급 2명)을 각각 증원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회복지정책실 내 부서간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며, 공중보건 관련 전문성을 갖춘 인력 확보를 위하여 역학조사담당 공무원의 직렬일부를 연구직으로 변경하고,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정원을 일반직 내 유사직렬로 전환(9급 1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한시조직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에 두는 긴급상황센터 및 감염병진단관리과를 정규조직으로 전환하고 이에 따른 한시정원 6명을 질병관리본부 공무원 정원으로 전환하며, 위기 소통담당관 및 위기분석국제협력과는 존속기한 2년 연장
- 나. 보건복지콜센터의 명칭을 ‘보건복지상담센터’로 변경하고 현행 수행업무에 부합하도록 분장사무 일부 조정
- 다.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공무원 증원사항 반영
- 라. 사회복지정책실 내 부서간 분장사무 일부 조정 반영
- 마. 역학조사업무 담당 일반직 6급 공무원 정원의 일부 직렬을 기존 ‘보건주사 또는 간호주사’에서 ‘보건주사 또는 보건연구사’로 변경하고, 관리운영직군 공무원 결원 발생에 따라 9급 1명을 일반직 유사직렬로 전환

64.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 예고일자 : 2017. 12. 08. • 마감일자 : 2018. 01. 17.
- 부칙명령 판결 확정 전 출소자에 대한 집행절차 마련 등의 내용으로 전자장치부착법 이 개정(법률 제14975호, 2017. 10. 31. 공포, 2017. 10. 31. 시행)됨에 따라 하위 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 • 부칙명령 집행장 신청 근거 조항 추가(안 제19조)
개정된 전자장치부착법 제13조제2항(부칙명령 판결 확정 전 출소자에 대한 집행을 위한 부칙명령 집행장 신청)을 신청 근거에 추가
 - 부칙명령 집행장 신청 서식 정비(별지 제51호 서식)
서식에 부칙명령 신청 근거 조항(전자장치부착법 제13조제2항)을 추가하여 명시

65.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 예고일자 : 2017. 12. 08. • 마감일자 : 2018. 01. 17.

- 직접지불제 간 형평성 확보 및 부당수령 방지를 위해 필요사항을 개정하고, 기타 입법 미비 사항을 보완하기 위함
- 가. 경영이양 직불금 신청 시 제출서류 변경(안 제7조제2항)
 - 신청자 본인의 정보 확인을 위해서 세대원 전체의 인적 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 등본 대신 초본으로 제출하도록 하여 과도한 개인 정보 요구를 하지 않도록 함
 - 농업인 확인을 위해 「농어업 경영체법」에 따른 경영체 등록 확인서 대신 농업 경영체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변경
- 나. 조건불리직불금 최소 신청 면적 명확화(안 제12조의5)
 - 조건불리직불금을 신청하기 위한 최소 토지 면적을 현행 1천제곱미터에서 휴경하는 농지를 제외한 1천제곱미터로 수정
- 다. 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제외 토지 예외 규정(안 제13조제1호)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정하고 있는 쌀·밭 직불제 지급대상 제외 농지 중 예외로 인정하는 내용과 유사하게 규정
- 라.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지급대상 제외 토지 규정(안 제13조제4~7호)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지급받은 자가 소유한 토지, 농지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무단 점유한 토지, 관리가 미흡한 토지 등은 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 마. 밭 직불금(논이모작)의 지급대상 제외농지 규정(안 제18조제1호)
 - 밭 직불금의 지급대상 제외농지에 현행 규정 외에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의 토지도 포함
- 바. 서류 제출 의무 부과(안 제20조제2항제3호)
 - 밭 직불금을 받으려는 자가 농촌 외의 지역에 거주할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66.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 예고일자 : 2017. 12. 08. ● 마감일자 : 2018. 01. 17.

- 조건불리보조금을 지급할 때에 마을공동기금 적립 의무를 폐지하고 지자체 자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마을공동기금 의무 적립 비율 근

거 규정을 삭제하고, 마을공동기금 사용을 위한 마을 운영 위원회 및 관리협약 의무를 재량행위로 완화하고자 함

○ 가. 마을공동기금 의무 적립 폐지(안 제31조제4항)

- 조건불리직불금 중 매년 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성해야 하는 마을공동기금의 근거 삭제
- 마을공동기금 적립 의무를 폐지하고, 계속 운영하고자 하는 지자체가 있을 경우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

나. 마을운영위원회 구성 의무를 재량행위로 변경(안 제28조제1항)

- 현재 조건불리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마을 단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나 마을공동기금을 폐지하므로, 마을 자율적으로 마을공동기금을 적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현행과 같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하도록 재량행위로 규정

다. 관리협약 체결 의무를 재량행위로 변경(안 제31조제1항)

- 운영위원회 구성 의무가 폐지됨으로써 운영위원회와 지자체 간의 관리협약 체결 의무도 삭제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마을을 위해서 관리협약 체결 의무도 재량행위로 규정

라. 기 적립된 마을적립기금 사용을 위한 경과규정(부칙 제2조)

- 마을공동기금 적립 의무가 폐지되어도, 기 적립된 마을공동기금이 있을 경우 소진 시까지 이전 규정에 따라 사용하도록 함

67.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7. 12. 08. • 마감일자 : 2017. 12. 15.
- 교육 정책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학교정책실, 대학정책실, 평생직업교육국, 지방교육지원국 등 교육부의 하부조직과 기능을 개편하는 내용의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17.00.00. 공포, 2018.1.1. 시행) 예정임에 따라 개편되는 기구의 분장 사무를 반영하고, 하부조직 간 일부 기능을 조정하려는 것임.
- 가. 교육 분야 국제 교류 활성화 및 유학생 증가에 대응하여 기획조정실 산하에 교육국제화담당관을 신설하고, 현행 기획조정실 산하의 교

육통계담당관을 교육통계과로 명칭 변경하여 교육안전 정보국 소속으로 이관하는 한편, 이에 따라 부서별 분장사무를 조정함(안 제4조제10항, 안 제13조제8항).

나. 고등교육에 대한 정책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학정책실을 고등교육정책실로 개편하고, 대학정책실의 대학정책과, 대학평가과, 대입제도과, 사립대학제도과, 산학협력정책과, 지역대학육성과, 전문대학정책과, 취업창업교육정책과, 학술진흥과, 대학재정과, 대학학사제도과, 대학장학과를 고등교육정책실의 고등교육정책과, 국립대학정책과, 사립대학정책과, 사학혁신지원과, 학술진흥과, 대학재정장학과, 대학학사제도과, 대입정책과, 교육일자리총괄과, 산학협력정책과, 중등직업교육정책과, 전문대학정책과로 개편하고, 이에 따라 각 과별 분장사무를 조정함(안 제8조).

다. 교육혁신 추진 및 초중등교육 정책 기능의 단계적 지방 이양 기반 마련을 위해 학교정책실을 학교혁신지원실로 개편하되, 학교정책실의 학교정책과, 공교육진흥과, 교원정책과, 교원복지연수과, 교육과정정책과, 교과서정책과, 교육과정운영과, 인성체육예술교육과를 학교혁신지원실의 학교혁신정책과, 교원정책과, 교원양성연수과, 교육협력과, 교육과정정책과, 교과서정책과, 교수학습평가과, 민주시민교육과로 개편하고, 이에 따라 각 과별 분장사무를 조정함(안 제9조).

다.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및 교육의 희망사다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학교정책실 소속 학생복지정책과, 방과후학교지원과와 지방교육지원국 소속 지방교육재정과, 유아교육정책과를 분리하여 교육복지정책국을 신설하고, 이에 따라 각 과별 분장사무를 조정함(안 제10조).

라. 특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위(Wee) 센터를 기반으로 한 학생 지원 정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학교정책실 소속 학교생활문화과, 학생건강정책과와 지방교육지원국 소속 특수교육정책과를 분리하는 한편, 교육기회보장과를 신설하여 학생지원국을 설치하고, 이에 따라 각 과별 분장사무를 조정함(안 제11조).

라. 4차 산업혁명 및 고령화 등 미래사회에 대비한 교육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평생직업교육국을 평생미래교육국으로 개편하고, 평생직

업교육국의 평생학습정책과, 인재직무능력정책과, 진로교육정책과, 직업교육정책과를 각각 평생미래교육국의 미래교육기획과, 평생학습정책과, 진로교육정책과, 이러닝과로 개편하며, 이에 따라 각 과별 분장사무를 조정함(안 제12조).

- 마. 일자리 나누기 정책에 적극 동참하여 교육혁신 추진을 위한 실무인력 확보를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도를 활용한 운영정원을 증원하는 한편, 임기제 공무원 채용 한도를 조정하여 전문인력 채용의 기반을 마련함(안 제21조제1항 및 제2항).